

# 최저임금 해결사

## 일자리 안정자금

### 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▶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### 지원대상

- ◆ **30인 미만 고용 사업주**
  - ▶ 공동주택 경비 ·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
- ◆ **최저임금 준수 조건**
  - ▶ 단, 고소득 사업자(과세소득 5억원 초과)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
- ◆ **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**
- ◆ **정규직 · 계약직 · 일용직 ·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**
  - ▶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사업주의 직계존비속)은 지원제외
- ◆ **고용보험 가입,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**
  - ▶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(합법취업 외국인, 초단시간 노동자 등)

### 지원금액

- ◆ **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**
  - ▶ 월중 입 ·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- ◆ **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**

### 지급방식

- ◆ **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**
  - ▶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
- ◆ **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**
  - ▶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- ◆ **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**

### 신청서 접수

- ◆ **온라인**
  - ▶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
- ◆ **방문 · 우편 · 팩스 (3,940개소)**
  - ▶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

###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꼭 챙기세요!

- ◆ 두루누리 **사회보험료** 지원 대상 · 수준 상향
  - ▶ 지원대상 기준보수 (현행) 월 보수 140만원 미만 → (개선) **190만원 미만**
  - ▶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(현행) 60% → (개선) **신규 90%** (5~10인 미만 80%)
- ◆ **건강보험료 50% 경감** (18년 한시)
  - ▶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
- ◆ 4대 보험 신규가입시 **2년간 세액공제**
  - ▶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%

최저임금 인상에 든든한 해결사!

문의 · 상담

근로복지공단  
1588-0075